

안산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33
----------	-----

제출년월일 : '95. 11.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개정이유

- 안산시 공무원의 사기양양과 우수하고 발전지향적인 전문 행정가 육성은물론 공부하고 연구하는 공무원상 정립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주요골자

○ 지급대상 확대 (안 제2조)

- 기존의 학자금 지급을 안산시 소재 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 재학증인자와 한국방송통신대학 졸업자에게 지급하던 것을 관내 및 관외 대학교, 전문대학 재학증인자와 한국방송통신대학의 재학자 및 공무원 배우자중 한국방송통신대학 재학자에게 지급
- 대학원 재학자와 한국방송통신대학 졸업자는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실감을 경감하기 위해 '96년도까지 한시적 지급 (부칙 제2항)

현	개 정 (안)
1. 안산시 소재 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에 재학증인자 2. 한국방송통신대학 졸업자	1. 대학교 및 전문대학에 재학증인자 2. 한국방송통신대학 재학증인자 3. 안산시 공무원의 배우자로서 한국방송통신대학 재학증인자

○ 학자금 지급 및 시기조정 (안 제3조)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지급액	1. 대 학 원 : 100만원 2. 대 학 교 : 100만원 3. 전문대학 : 70만원 4. 한국방송통신대학 졸업자 : 70만원	1. 대학교 재학자 : 100만원 2. 전문대학 재학자 : 70만원 3. 한국방송통신대학 재학자 : 20만원 4. 공무원의 배우자중 한국방송통신대학 재학자 : 20만원
시 기	년 1회 4월말	년 1회 7월말

□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5조
- 예산현황 : '96년도 본예산에 계상
- 기타 참고사항 : 경기도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

안산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지급대상) 안산시에 재직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자금을 지급한다.

1. 대학교·및 전문대학에 재학증인자
2.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증인자
3. 안산시 공무원의 배우자로서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증인자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학자금지급) 학자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따라 연 1회 7월 말에 지급한다.

1. 대학교 : 100만원
2. 전문대학 : 70만원
3. 한국방송통신대학 : 20만원

제4조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호적초본 및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배우자에 한함)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p>제2조(지급대상) 안산시에 재직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자금을 지급한다.</p> <p>1. 안산시 소재 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에 재학증인자</p> <p>2. 한국방송통신대학 졸업자</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3조(학자금지급) 학자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기준에 따라 연 1회 4월에 지급한다.</p> <p>제4조(신청) 학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분청의 실, 과장, 직속 기관장, 사업소장 및 동장을 경유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4.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2조(지급대상)</p> <p>1. <u>대학교, 전문대학에 재학증인자</u></p> <p>2. <u>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증인자</u></p> <p>3. <u>안산시 공무원의 배우자로서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증인자</u></p> <p>제3조(학자금지급) 학자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각호의 1의 기준에 따라 연1회 7월에 지급한다.</p> <p>제4조(신청)</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호적초본 및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배우자에 한함)</u></p>

현행	개정
<p>제5조(지급중단) 다음 각호의 1~3호에 해당할 때에는 학자금 지급을 중단하고 4호에 해당할 때에는 기 지급된 학자금을 전액회수한다.</p> <p>1. 2. (생략)</p> <p>3. 기타 시장이 학자금 지급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4. (생략)</p>	<p>제5조(지급중단)</p> <p>.....</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3. 재학중 학점미달 등의 사유로 유급되는등 시장이 학자금 지급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4. (현행과 같음)</p>

안산시 공무원 학자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433
----------	-----

제출년월일 : '95. 11. 15

제출자 : 총무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안산시 공무원 학자금 지급대상자에 있어서 대학원도 학자금 지급대상에 기존처럼 포함시키고 안산시 공무원의 배우자로서 방송통신대학에 재학증인자를 학자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형평성 및 효과성이 결여된 것으로 학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2. 수정주요골자

- 제2조(지급대상)중 제1호를 "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에 재학증인자"로 수정하고, 제3호를 삭제하고
- 제3조(학자금의 지급)중 제1호 "대학원 : 100만원"을 신설하고 제1호를 제2호로, 제2호를 제3호로, 제3호를 제4호로 수정하고,
- 제4조(신청)중 제5호 "호적초본 및 주민등록등본(공무원의 배우자에 한함)"를 삭제하고,
- 부칙 제2항(경과조치)중 "관내대학원 재학자 및"을 삭제함.

안산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지급대상)중 제1호를 "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에 재학중인자"로 수정하고,
제3호를 삭제한다.

제3조(학자금의 지급)중 제1호 "대학원 : 100만원"을 신설하고 제1호를 제2호로,
제2호를 제3호로, 제3호를 제4호로 수정한다.

제4조(신청)중 제5호 "호적초본및 주민등록등본(공무원 배우자에 한함)"를 삭제한다.

부

칙

제2항(경과조치)중 "관내 대학원 재학자및"을 삭제한다.

안산시 공무원 학자금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원 안	수 정 안
<p>제2조(지급대상) 안산시에 재직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자금을 지급한다.</p> <p>1. <u>대학교, 전문대학에 재학증인자</u></p> <p>2. (생 략)</p> <p>3. <u>안산시 공무원의 배우자로서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증인자</u></p> <p>제3조(학자금의 지급) 학자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따라 연 1회 7월말에 지급한다.</p> <p>1. 대 학 교 : 100만원</p> <p>2. 전문대학 : 70만원</p> <p>3. 한국방송통신대학 : 20만원</p> <p>제4조(신청) (생 략)</p> <p>1. ~ 4. (생 략)</p> <p>5. <u>호적초본 및 주민등록등본(공무원 배우자에 한함)</u></p>	<p>제2조(지급대상) ----- ----- ----- -----</p> <p>1. <u>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에 재학증인자</u></p> <p>2. (생 략)</p> <p>3. <u>< 삭 제 ></u></p> <p>제3조(학자금의 지급) ----- ----- -----</p> <p>1. <u>대 학 원 : 100만원</u></p> <p>2. 대 학 교 : 100만원</p> <p>3. 전문대학 : 70만원</p> <p>4. 한국방송통신대학 : 20만원</p> <p>제4조(신청) (생 략)</p> <p>1. ~ 4. (생 략)</p> <p>5. <u>< 삭 제 ></u></p>

